



## 민권국 (CIVIL RIGHTS DIVISION)

### 장애인 납세자를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

#### 자주 묻는 질문

1973년 재활법의 섹션 504(이하 "섹션 504")는 장애인들에게 연방 정부가 시행 또는 자금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혜택과 서비스에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연방 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IRS)은 IRS 사무소는 물론 아래와 같은 IRS 지원 프로그램들이 섹션 504를 확실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 자원자 소득세 신고지원(VITA) 사무소
- 고령자 세무 상담(TCE) 클리닉
-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 사무소

섹션 504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아래의 답변을 읽어보면, IRS가 시행하고 IRS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 납세자를 위한 IRS의 합리적 편의 제공 정책이 무엇입니까?

IRS 합리적 편의 제공 정책 P-1-47에는 일반 장애인들이 IRS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IRS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합리적 편의가 무엇입니까?

합리적 편의는 장애인들이 연방정부가 시행/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 관행, 절차 또는 서비스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누가 합리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자격자입니까?

섹션 504에 근거하여 한 가지 이상의 주된 일상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간주하며 이들은 합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합리적 편의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합리적 편의 제공이 필요할 경우, IRS 직원이나 IRS 지원 프로그램의 자원자에게 귀하가 장애로 인하여 규칙, 정책, 관행 또는 서비스의 변경, 수정, 예외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십시오. 처음에 편의 제공을 요구하기 위해 섹션 504 를 언급하거나 "합리적 편의"라는 어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5. 합리적 편의를 언제 요구해야 합니까?

IRS 사무소나 IRS 지원 프로그램 또는 사무소를 방문할 때 언제든지 합리적 편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나 IRS 또는 IRS 지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기타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사전에 합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6.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합리적 편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IRS 시행 또는 IRS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대신하여 누구든지 합리적 편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7. 합리적 편의 제공 요구를 받을 경우 IRS 시행 또는 IRS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해당 프로그램은 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귀하에게 필요한 편의 유형
- 요구한 편의를 통해 귀하가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요구한 편의를 제공할 경우, 프로그램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거나 프로그램에 과도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인지 여부

요구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프로그램에 과도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귀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귀하가 프로그램, 활동 또는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체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프로그램이 협조해야 합니다.

#### 8. 내가 요구한 편의를 IRS 시행 또는 IRS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할 것이 필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요구한 편의 내용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과도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귀하의 필요성과 해당 IRS 시행 또는 IRS 지원 프로그램의 가용 자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과도한 부담 때문에 귀하가 요구한 편의가 거절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은 효율적인 대체 편의 방안을 찾기 위해 귀하와 협조해야 합니다.

#### 9. 합리적 편의 요구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까?

합리적 편의 요구를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서면으로 요구하면 유용한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10. 내가 합리적 편의를 요구하면 IRS 시행 또는 IRS 지원 프로그램에서 의료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합리적 편의를 요구하는 납세자에게 프로그램이 의료 기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질문의 범위는 귀하가 IRS 시행 또는 IRS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능력에 대한 장애물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편의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11. 합리적 편의의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작성된 IRS 납세자 편의 안내(Taxpayer Accommodation Guide, TAG)에는 아래와 같이 예상되는 많은 합리적 편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건물 접근성 조항
- 수화 통역자 서비스
- 점자/큰 글씨 문서

TAG 는 합리적 편의 요구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질문이 있는 IRS 직원들을 위한 내부 자원입니다.

**12. 합리적 편의 절차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나의 합리적 편의 제공 요구가 거절될 경우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까?**

IRS 민권국은 장애인이 섹션 504 에 따라 IRS 시행 또는 IRS 지원 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합리적 편의 절차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IRS 민권국 섹션 504 담당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TTY/TTD: 202-289-4394

이메일: [edi.crd.ra@irs.gov](mailto:edi.crd.ra@irs.gov)

귀하의 합리적 편의 요구가 잘못되게 거절되었다고 생각되면 거절일로부터 **180 일** 내에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민권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주소: Director  
Civil Rights Division  
1111 Constitution Avenue, NW, Room 2413  
Washington, DC 20224

이메일: [edi.civil.rights.division@irs.gov](mailto:edi.civil.rights.division@irs.gov)